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92 호 2017. 11. 10(금)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63호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264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남해군조례 제2265호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
남해군조례 제2266호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7
남해군조례 제2267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남해군조례 제2268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13
남해군조례 제2269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6
남해군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3
남해군조례 제2271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남해군조례 제2272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남해군조례 제2273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2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28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35
--------------	---------------------------	----

고 시

제2017 - 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9
제2017 - 115호	도로명 주소 고시	40
제2017 - 116호	부윤천 정비공사(1차)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43
제2017 - 117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46
제2017 - 120호	남해군관리계획(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47
제2017 - 121호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50

공 고

제2017 - 103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53
제2017 - 1050호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6
제2017 - 1051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60
제2017 - 1054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공사완료 공고	64
제2017 - 1058호	남해군 택시부제 해제 공고	66
제2017 - 1059호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67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63호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6조제1항”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64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되도록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65호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2.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5.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② 지붕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백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및 폐기물 등 모든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시 지급하고 완료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가능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66호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영세 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67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기재하고”를 “적고”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해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남해군 조례 제2268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한 영세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는 남해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사랑상품권”이란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남해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남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남해군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1만원권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남해군 일원으로 한다.

제6조(대행점 지정 및 위탁 수수료) ① 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행점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남해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주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남해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반하는 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②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환전청구 등)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 시 상품권의 위·변조여부를 확인 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의 할인판매)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69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등(법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6.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15조 관련)

1.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 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 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2.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의 종류
공 공 공 간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 공간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공 공 건 축 물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3. 다음의 분류에 따른 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용품의 종류
공 공 용 품	안전용품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용품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복지용품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의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	기념품, 공공 공예품 등

4. 남해군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각 이미지의 종류
시 각 이 미 지	정보디자인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상징이미지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남해군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남해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71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72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종합사업”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사용료 및 납부)”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할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물의 사용료

1. 신전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수용 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원룸형 휴양촌	4인실	6명	100,000	120,000	1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단체동 휴양촌	15인실	20명	200,000	200,000	200,000	5,000	5,000	
복층형 휴양촌	4인실	5명	100,000	130,000	130,000	10,000	10,000	
	6인실	7명	150,000	180,000	180,000	10,000	10,000	
	12인실	13명	250,000	300,000	300,000	10,000	10,000	
활성화센터	회의실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물놀이 체험장			5,000	5,000	5,000			1명당 사용료

2. 강진만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수용 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갯벌생태 학교	본관 2층	4인실	6명	60,000	60,000	60,000	10,000	5,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본관 3층	4인실	6명	80,000	80,000	80,000	10,000	5,000	
		10인실	15명	150,000	150,000	150,000	10,000	5,000	
	별관 1층	5인실	6명	130,000	130,000	130,000	10,000	5,000	
	별관 2층	세미나실	80명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1일 1회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기준
농 어 민 운동시설	목욕탕		1인당 월 15,000원						

남 해 군 공 보

(28) 제 592 호

2017년 11월 10일

3. 진동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 용 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고사리체험관	4인실	6명	50,000	50,000	70,000	10,000	-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공동주방 (4인기준)		20,000	20,000	20,000	5,000	-	
	세미나실 (1일기준)	20명	100,000	100,000	100,000			
계류장			500,000					요트 1척당 1년 사용료

4. 꽃내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 용 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센터	4인실	7명	150,000	150,000	190,000	15,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15인실	20명	300,000	300,000	350,000	15,000	10,000	
	풋살장(주간)		30,000	30,000	3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풋살장(야간)		50,000	50,000	5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세미나실		100,000	100,000	100,000			숙박 시 무료
	건물 전체		1,500,000	1,500,000	1,500,000			1일 기준
동천목욕탕	대인		4,000	4,000	4,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1명당 1회 사용료
	소인		3,000	3,000	3,000			

5. 상덕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센터	가족실	6명	170,000	220,000	2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8인실	12명	170,000	170,000	170,000	10,000	10,0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8월)
	15인실	20명	300,000	300,000	300,000	10,000	10,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다목적실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천연잔디 운동장		100,000	100,000	100,000	1시간 추가 5만원		1일 1회 2시간 기준

6. 해بار리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힐링센터	4인실(A형)	6명	60,000	60,000	6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4인실(B형)	6명	80,000	80,000	80,000	10,000	10,000	
	12인실	15명	250,000	250,000	250,000	10,000	10,000	
	강당	100명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족구장		30,000	30,000	30,000	1시간 추가 1만원		1일 1회 2시간 기준

7. 북남치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 ~ 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센터	4인실	6명	100,000	120,000	1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6인실	8명	120,000	150,000	150,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8. 송정마을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수용정원 대수용정원	대학생 이하		일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 하우스	2인실		15,000	20,000	20,000	25,000	1인 1박 기준 입실 14:00 퇴실 익일 12:00 성수기 : 7~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6인실		13,000	18,000	18,000	20,000	
	8인실		13,000	18,000	18,000	20,000	

[별표 2]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1. 상덕권역 시설물

가. 2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30명 이상)인 경우 천연잔디운동장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권역(구미·덕월·남구·북구) 주민들이 가족실 및 8인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해بار리권역 시설물

가. 2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30명 이상)인 경우 족구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나. 방문객이 숙박하면서 강당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

3. 송정마을 시설물

가. 보호자 동반 만 5세 이하는 사용료의 100%를 감면한다.

남해군 조례 제2273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남해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 수립

5.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사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3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8인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 회의의 심의로 본다.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2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남해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및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하며, 제141조, 제150조제3항 및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취급점(금고)의 정 기예금 중 최고이 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 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 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 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 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 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 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양지천(지방하천)
2.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대표 : 양하윤)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
4. 점용목적 : 전주 신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면 덕월리 170-10번지, 170-1번지
6. 점용면적 : 0.785m²
7. 점용기간 : 2017. 10. 26. ~ 2021.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7 - 11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78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어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림리 683-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78	2016090427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반리 3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28	2016090702
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733-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강진만로 236-15	2016090427
4	경상남도 남해군 신탄면 물간리 295	경상남도 남해군 신탄면 독일로 4	2016090427
5	경상남도 남해군 신탄면 진목리 1220	경상남도 남해군 신탄면 설천로 206-27	2016090427
6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서대리 1037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서부로 771	2016090427
7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서대리 473-1, 475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서부로 908	2016090427
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2155-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593번길 24-92	2016090427
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085-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01번길 11	2016090427
10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당저리 187-10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동부대로2134번길 13-6	2016090427
11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당저리 187-8	경상남도 남해군 향신면 동부대로2134번길 13-8	2016090427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반리 27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24-3	20100915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반리 270-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24-5	20100915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천리 110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81번길 67	2016090427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신리 63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75번길 87-22	2016090427
16	경상남도 남해군 신탄면 진목리 65-1	경상남도 남해군 신탄면 설천로332번길 87-38	2016090427
1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호리 45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호로124번길 34	20100915

폐 지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1	남면 덕월리 1085-4	20171018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남해군의 중심도로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김진민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향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향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무지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지사유
민원신청

남해군 고시 제2017 - 116호

부윤천 정비공사(1차)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하천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윤천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본 과업은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에 부윤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324m(기정) → L=341m(변경)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당초 : 2016. 7. ~ 2017. 12.
 - 변경 : 2016. 7.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800백만원(도비400, 군비400)
9. 예정공정표 : 2016. 7 ~ 2018. 12. (설계도서 참고)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준공 후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 안전총괄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7. 11. ~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현금지급
 - 보상가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 지 조 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계	기정		9필지		24,981	4,155			
	변경		10필지		17,431	5,153			
1	기정	오용리	1343	구	14,151	1,873	국유지	국 (농림축산 식품부)	
2	기정	"	1281-2	답	1,498	346	창원시 상남동	김*심 외 1인	
	변경	"	1281-39		469	469	창원시 상남동	김*심 남해군	
3	기정	"	1281-2	답	1,498	346	창원시 상남동	김*심 외 1인	
	변경	"	1281-47		133	133	창원시 상남동	김*심 남해군	
4	기정	"	1281-3	전	995	3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김*균	
	변경	"	1281-40		19	19		김*균	
5	기정	"	1281-37	전	109	1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김*숙	
	변경	"	1281-46		11	11		김*숙	
6	기정	"	1281-9	답	1,375	381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이*순	
	변경	"	1281-49		315	315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이*순	
7	기정	"	1281-25	답	496	88	인천광역시 북구 갈산동	김*만	
	변경	"	1281-44		110	110		남해군	
8	기정	"	1281-31	답	1,653	77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김*호	
	변경	"	1281-45		984	984		남해군	
9	기정	"	1281-13	답	2,020	91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정*모	
	변경	"	1281-42		181	181		남해군	
10	기정	"	1281-14	답	2,684	5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김*일	
	변경	"	1281-43		815	815		남해군	
11	추가	"	1281-48	답	243	243	창원시 상남동	김*심 남해군	

남해군 고시 제2017 - 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화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관매달기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번지
6. 점용면적 : 6.98㎡
7. 점용기간 : 2017. 11. 1.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17 - 120호

남해군관리계획(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공간시설 : 유원지)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설리유원지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대	-	증)92,503	92,503	-	계획 관리 지역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설리 유원지	유원지 신설 (A=92,503㎡)	○ 대상지 일원의 아름다운 해안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숙박 및 휴양시설(유원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해양관광공간을 조성하여 남해군의 부족한 오락 휴양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다.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비 고
40% 이하	100% 이하	65m 이하	

2.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2,503	100.0	
신 설	휴양시설	20,717	22.4	
신 설	특수시설	8,663	9.4	
신 설	관리시설	19,906	21.5	
신 설	편익시설	1,035	1.1	
신 설	녹지시설	42,182	45.6	

나. 시설별 조서

시설명	시설 번호	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92,503	22,265	
휴양시설		20,717	21,616	
숙박시설(타워)	1	3,787	13,638	
숙박시설(빌리지1)	2	1,640	1,056	
숙박시설(빌리지2)	3	8,705	4,258	
숙박시설(빌리지3)	4	6,585	2,664	
특수시설		8,663	17	
광장1	5	3,504	-	
광장2	6	2,231	-	
광장3	7	1,429	-	
광장4	8	1,499	17	
관리시설		19,906	44	
도로	9	11,663	22	
주차장	10	7,193	-	
가스저장소	11	1,050	22	
편익시설		1,035	584	
카페동	12	682	480	
전망대	13	353	104	
녹지시설		42,182	-	
원형녹지	14	24,631	-	
조성녹지	15	17,551	-	

남해군 고시 제2017 - 121호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삼동면 봉화리 산308-1	-	증)58,000	58,000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1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급설비 신설 A= 5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 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 코자 함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48	4	국지 도로	1,580	산366-8 소2-106	산308-1	일반도로	전기공급 설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소로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3-A 신설 - L= 1,580m - B= 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급설비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 설을 위해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코자 함 	

2. 승인 조건사항

- 가. 상업발전시설의 준공은 교량 및 도로의 준공 이후 가능하고 1년이상 사업이 중단되거나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준공후 용도 변경 사항이 발생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사업절차이행토록 조치할 것.
- 나. 공사진행 중 또는 완공 시 폐기물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103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가칭)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가칭)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열람기간 : 2017.10.30. ~ 2017.11.1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415
- 의견제출기간 : 2017.10.30. ~ 2017.11.1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참조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붙임참조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면·리	지번				성 명	주 소	
1	상동면 동천리	1108-1	답	3101	3101	신쌍0	경남 남해군 삼동면 ***	
2	삼동면 동천리	1130-13	답	815	815	조춘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	
3	삼동면 동천리	1130-1	답	37	37	조춘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 번	소재지	대상물건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 규격	면적/ 수량	성 명	주 소	
1	삼동면 동천리 1108-1	참다래	묘목	50주	신쌍0	경남 남해군 삼동면 ***	
2	“	참다래	7~8년생	20주	“	“	
3	“	참다래	20년생, 스프링쿨러, 지주목 40mm 등 포함	87주	“	“	
4	“	울타리	쇠파이프철망(2단)	1식	“	“	
5	“	농사용전기	5kw	1식	“	“	
6	“	지하수(관정)	농사용	1식	“	“	
7	“	영농손실액		3,101㎡	“	“	

남해군 공고 제2017 - 1050호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빈집 정비로 규정(안 제2조)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빈집정비 대상으로 규정(안 제6조)

○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860-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철거 등) ① 군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1051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조 례 명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 지원(안 제2조)

나. 출연금 요청(안 제3조)

다. 출연금 지급 및 결산(안 제4 ~ 5조)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2017. 11. 22 (22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사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가. 주 소 : (우 52410)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 나. 전 화 : 055-860-3195, FAX 055-860-3706
- 다. 이메일 : angeloose@korea.kr

- 붙임 1.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남해군 공고 제2017 - 1054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공사완료 공고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에 남해군 고시 제2017-78호(2017.7.25.)로 인가된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 명 칭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31,102.0㎡
 - 규 모

시 설	면 적(㎡)	비 고
계	1,331,102.0	
체육시설	가. 313,344.0	
건축시설	나. 35,116.0	
공공시설	다. 108,908.5	
녹지시설	라. 873,73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회사명) : (주)한섬피앤디 대표이사 강○수, 정○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 성명(회사명) : (주)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강○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

5. 사업기간 : 2017.7.27. ~ 2017. 8. 3.

남해군 공고 제2017 - 1058호

남해군 택시부제 해제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및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 공 고 명 : 남해군 택시부제 해제
- 시 행 일 : 2017. 12. 1. 00:00부터
- 적용대상 : 남해군 관내 택시(개인·일반)

관내 모든 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는 택시부제해제에 따른 제반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5)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1059호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부윤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6. 7. ~ 2018.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부윤천 정비공사(1차)」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343번지 외 9필지 일원	L=341m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열람기간 : 2017. 11. 8.~2017. 11. 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11. 8.~2017. 11. 22.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대장	현재	총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남해	창선	오용	1,343		구	구	14,151	1,873		국(농림축산식품부)				
2	남해	창선	오용	1281-2	1281-39	답	답	1,498	469	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김*신 남해군				
3	남해	창선	오용	1281-2	1281-47	답	답	1,498	133	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김*신 남해군				
4	남해	창선	오용	1281-24	1281-48	답	답	440	243	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김*신 남해군				
5	남해	창선	오용	1281-3	1281-40	전	전	995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김*균				
6	남해	창선	오용	1281-9	1281-49	답	답	1,375	315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이*순				
7	남해	창선	오용	1281-13	1281-42	답	답	2,020	181		남해군				
8	남해	창선	오용	1281-14	1281-43	답	답	2,684	815		남해군				
9	남해	창선	오용	1281-25	1281-44	답	답	496	110		남해군				
10	남해	창선	오용	1281-31	1281-45	답	답	1,653	984		남해군				
11	남해	창선	오용	1281-37	1281-46	전	전	109	11	서울특별시 상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김*숙				
계								26,919	5,153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